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00-000-2017 0144 4301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929-1***** 김진태 외 2인	피보험자	135-83-009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험가입금액	金 四百四拾五萬貳仟參百貳拾 圓整 ₩4,452,320-	보험료	₩121,010-
보험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19년 04월 03일까지 (730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공동계약자 : 김진태(650929-1*****), 민경미(650413-2*****), 반미남(631224-1*****)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동천동 579-8 외 2필지(14세대) 담보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19년 04월 03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7년 04월 04일 계약금액 ₩989,403,770- 보증금율 0.45%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 발급	지점	성남지점	김면우	031-781-0021
	대리점	진보협	강연숙	031-707-2125

2017년 04월 0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최종구



대한민국 정부 인자세 200원
중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 (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0000063545919-00001-20170403

후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00-000-2017 0144 4308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929-1***** 김진태 외 2인	피보험자	135-83-009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험가입금액	金 壹仟百八拾七萬貳仟八百五拾 圓整 ₩11,872,850-	보험료	₩484,050-
보험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20년 04월 03일까지(1,096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공동계약자 : 김진태(650929-1*****), 민경미(650413-2*****), 반미남(631224-1*****)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동천동 579-8 외 2필지(14세대) 담보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20년 04월 03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7년04월04일 계약금액 ₩989,403,770- 보증금율 1.2%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 발급	지점	성남지점	김면우	031-781-0021
	대리점	진보형	강연숙	031-707-2125

2017년04월0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최종구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중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 (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주)한국서비스진흥협회

0000063545921-00001-20170403

후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00-000-2017 0144 4312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929-1***** 김진태 외 2인	피보험자	135-83-009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험가입금액	金 七百四拾貳萬五百參拾 圓整 ₩7,420,530-	보험료	₩504,220-
보험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22년 04월 03일까지 (1,826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공동계약자 : 김진태(650929-1*****), 민경미(650413-2*****), 반미남(631224-1*****)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동천동 579-8 외 2필지(14세대) 담보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22년 04월 03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7년 04월 04일 계약금액 ₩989,403,770- 보증금율 0.75%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 발급	지점	성남지점	김면우	031-781-0021
		성남 분당구 아람로81번길 16 7층 외환은행빌딩 (아람동)		
	대리점	진보협	강연숙	031-707-2125

2017년 04월 0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최종구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 (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주)한국서비스진흥위원회

0000063545924-00001-20170403

후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00-000-2017 0144 4315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650929-1***** 김진태 외 2인	피보험자	135-83-009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험가입금액	金 五百九拾參萬六仟四百參拾 圓整 ₩5,936,430-	보험료	₩806,760-
보험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27년 04월 03일까지 (3,652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2.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됩니다. 공동계약자 : 김진태(650929-1*****), 민경미(650413-2*****), 반미남(631224-1*****)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용인 수지구 동천동 579-8 외 2필지(14세대) 담보기간 2017년 04월 04일부터 2027년 04월 03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7년04월04일 계약금액 ₩989,403,770- 보증금율 0.6%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증권 발급	지점	성남지점 김면우 031-781-0021 성남 분당구 아탑로81번길 16 7층 외환은행빌딩 (아탑동)
	대리점	진보험 강연숙 031-707-2125

2017년04월0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최종구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 (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위원회

0000063545930-00001-20170403

후면

담보물수령증



No. 314-30-2017000695-0001

담 보 물 내 용	액 면 금 액	₩ 4,008,000 원정 (금 사백만팔천 원정)		
	담 보 물 종 류	정기예금	증 서 번 호	32291018546111
계 약 내 용	발 행 기 관	하나은행	담 보 제 공 자	김진태 (650929-1457313)
	발 행 일	2017-04-03	만 기 일	2032-04-03
계 약 내 용	보 험 상 품	이행(하자)보증보험	증 권 번 호	100-000-201701444301
	보 험 계 약 자	김진태		
계 약 내 용	보 험 기 간	2017-04-04 ~ 2019-04-03		

- 위 보험계약의 담보물로서 위의 담보물을 수령하되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시에는 우리회사 임의로 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은 담보제공자 본인이 부담함.
 - 위 담보물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없이 다음 각 호 1의 경우 등 보험계약의 이행완료가 확인되는 경우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할 수 있음. [단, 위 담보물이 타 보험계약에도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타보험계약의 이행완료 확인 필요]
 - 이행(입찰)보증보험 계약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이 확인된 때
 - 당해 보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이행완료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증권이 회수되고 보험계약상의 이행의무가 이행완료 되었음이 확인(계약담당 공무원의 서명 날인 등)된 때
 -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우리회사에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전액 변제 되었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실효 등의 이유로 보험증권이 불이용 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증권불이용 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귀사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때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바(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함.
 - 영문증권이 발급된 보험계약(Bond 상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함.
 - 피보험자가 날인한 보험계약자의 이행완료확인서나 보험계약이 보증하는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는 등 보험계약상 보증채무 소멸이 확인된 때
 - 영문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또는 보험금 청구기간 경과시 (단,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시)
 - 다만, 전2항 또는 전3항의 반환 또는 질권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가 우리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연대보증채무, 사전구상 관련 채무 등 포함) 우리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 시기, 가격으로 추심 또는 처분하여 변제충당 하겠으며, 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채권가압류 등의 사유 발생시 반환(질권해지) 보류 또는 압류추심 등에 의한 제3자의 처분이 가능함. 또한, 담보물 처리방법(반환 또는 질권해지 등)은 우리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르며, 우리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별도 통지나 동의 없이 발행기관에 질권소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우리회사의 전1항 또는 전4항에 따른 담보물 처분 후 잔여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 처분일까지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이를 담보물로 재가입 해야 하며, 재가입 지체 또는 불이행시 잔여담보금액에 대하여 담보물 보관기간(반환사유 발생일 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 을, 보관기간 종료일 익일부턴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공탁금 이율" 을 일단위로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실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담보제공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한 담보물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반환(질권해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증권, 우리회사 소정의 확인서 또는 하자보수종료 통지서(사본), 담보물 수령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함.
 - 전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질권해지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회사에서 조치함.
 - 담보제공자는 위 담보물의 만기갱신 등 담보물 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소지, E-Mail 변경사항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회사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만기일에 반드시 우리회사 및 발행기관과 협의하고 방문하여 담보물 만기갱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만기갱신 지체, 불이행 또는 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자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 위 담보물을 정히 수령함.

2017년 04월 0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성남지점
취급자 김면우
지점장 신진용

※ 지점전화: 031-781-0021

※ 취급자 및 지점장이 없는 것은 무효임.



담보물수령증



No. 314-30-2017000696-0001

담 보 물 내 용	액 면 금 액	₩ 10,686,000 원정 (금 일천육십팔만육천 원정)		
	담 보 물 종 류	정기예금	증 서 번 호	32291018547811
계 약 내 용	발 행 기 관	하나은행	담 보 제 공 자	김진태 (650929-1457313)
	발 행 일	2017-04-03	만 기 일	2032-04-03
계 약 내 용	보 험 상 품	이행(하자)보증보험	증 권 번 호	100-000-201701444308
	보 험 계 약 자	김진태		
	보 험 기 간	2017-04-04 ~ 2020-04-03		

- 위 보험계약의 담보물로서 위의 담보물을 수령하되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시에는 우리회사 임의로 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은 담보제공자 본인이 부담함.
- 위 담보물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없이 다음 각 호 1의 경우 등 보험계약의 이행완료가 확인되는 경우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할 수 있음. [단, 위 담보물이 타 보험계약에도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타보험계약의 이행완료 확인 필요]
 - 이행(입찰)보증보험 계약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이 확인된 때
 - 당해 보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이행완료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증권이 회수되고 보험계약상의 이행의무가 이행완료 되었음이 확인(계약담당 공무원의 서명 날인 등)된 때
 -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우리회사에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전액 변제 되었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실효 등의 이유로 보험증권이 불이용 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증권불이용 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귀사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때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바(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함.
- 영문증권이 발급된 보험계약(Bond 상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함.
 - 피보험자가 날인한 보험계약자의 이행완료확인서나 보험계약이 보증하는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는 등 보험계약상 보증채무 소멸이 확인된 때
 - 영문보증증권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또는 보험금 청구기간 경과시 (단,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시)
- 다만, 전2항 또는 전3항의 반환 또는 질권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가 우리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연대보증채무, 사전구상 관련 채무 등 포함) 우리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 시기, 가격으로 추심 또는 처분하여 변제충당 하겠으며, 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채권가압류 등의 사유 발생시 반환(질권해지) 보류 또는 압류추심 등에 의한 제3자의 처분이 가능함. 또한, 담보물 처리방법(반환 또는 질권해지 등)은 우리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르며, 우리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별도 통지나 동의 없이 발행기관에 질권소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우리회사의 전1항 또는 전4항에 따른 담보물 처분 후 잔여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 처분일까지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이를 담보물로 재가입 해야 하며, 재가입 지체 또는 불이행시 잔여담보금액에 대하여 담보물 보관기간(반환사유 발생일 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 을, 보관기간 종료일 익일부턴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공탁금 이율" 을 일단위로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실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담보제공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한 담보물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반환(질권해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증권, 우리회사 소정의 확인서 또는 하자보수종료 통지서(사본), 담보물 수령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함.
- 전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질권해지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회사에서 조치함.
- 담보제공자는 위 담보물의 만기갱신 등 담보물 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소지, E-Mail 변경사항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회사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만기일에 반드시 우리회사 및 발행기관과 협의하고 방문하여 담보물 만기갱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만기갱신 지체, 불이행 또는 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등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자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위 담보물을 정히 수령함.

2017년 04월 0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성남지점
취급자 김면우
지점장 신진용



※ 지점전화: 031-781-0021

※ 취급자 및 지점장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담보물수령증



No. 314-30-2017000697-0001

담 보 물 내 용	액 면 금 액	₩ 6,679,000 원정 (금 육백육십칠만구천 원정)		
	담 보 물 종 류	정기에금	증 서 번 호	32291018548411
계 약 내 용	발 행 기 관	하나은행	담 보 제 공 자	김진태 (650929-1457313)
	발 행 일	2017-04-03	만 기 일	2032-04-03
	보 험 상 품	이행(하자)보증보험	증 권 번 호	100-000-201701444312
	보 험 계 약 자	김진태		
	보 험 기 간	2017-04-04 ~ 2022-04-03		

- 위 보험계약의 담보물로서 위의 담보물을 수령하되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시에는 우리회사 임의로 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은 담보제공자 본인이 부담함.
 - 위 담보물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없이 다음 각 호 1의 경우 등 보험계약의 이행완료가 확인되는 경우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할 수 있음. [단, 위 담보물이 타 보험계약에도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타보험계약의 이행완료 확인 필요]
 - 이행(입찰)보증보험 계약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이 확인된 때
 - 당해 보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이행완료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증권이 회수되고 보험계약상의 이행의무가 이행완료 되었음이 확인(계약담당 공무원의 서명 날인 등)된 때
 -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우리회사에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전액 변제 되었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실효 등의 이유로 보험증권이 불이용 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증권불이용 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귀사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때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바(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함.
 - 영문증권이 발급된 보험계약(Bond 상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함.
 - 피보험자가 날인한 보험계약자의 이행완료확인서나 보험계약이 보증하는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는 등 보험계약상 보증채무 소멸이 확인된 때
 - 영문보증증권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또는 보험금 청구기간 경과시 (단,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시)
 - 다만, 전2항 또는 전3항의 반환 또는 질권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가 우리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연대보증채무, 사전구상 관련 채무 등 포함) 우리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 시기, 가격으로 추심 또는 처분하여 변제충당 하겠으며, 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채권가압류 등의 사유 발생시 반환(질권해지) 보류 또는 압류추심 등에 의한 제3자의 처분이 가능함. 또한, 담보물 처리방법(반환 또는 질권해지 등)은 우리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르며, 우리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별도 통지나 동의 없이 발행기관에 질권소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우리회사의 전1항 또는 전4항에 따른 담보물 처분 후 잔여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 처분일까지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이를 담보물로 재가입 해야 하며, 재가입 지체 또는 불이행시 잔여담보금액에 대하여 담보물 보관기간(반환사유 발생일 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 을, 보관기간 종료일 익일부터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공탁금 이율” 을 일단위로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실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담보제공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한 담보물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반환(질권해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증권, 우리회사 소정의 확인서 또는 하자보수종료 통지서(사본), 담보물 수령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전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질권해지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회사에서 조치함.
 - 담보제공자는 위 담보물의 만기갱신 등 담보물 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소지, E-Mail 변경사항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회사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만기일에 반드시 우리회사 및 발행기관과 협의하고 방문하여 담보물 만기갱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만기갱신 지체, 불이행 또는 담보물에 대한 제 3자의 가압류 등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자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 위 담보물을 정히 수령함.

2017년 04월 03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성남지점
취급자 김면우
지점장 신진용

(인)
(인)

※ 지점전화: 031-781-0021

※ 취급자 및 지점장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담보물수령증



No. 314-30-2017000698-0001

담 보 물 내 용	액 면 금 액	₩ 5,343,000 원정 (금 오백삼십사만삼천 원정)		
	담 보 물 종 류	정기예금	증 서 번 호	32291018549111
	발 행 기 관	하나은행	담 보 제 공 자	김진태 (650929-1457313)
계 약 내 용	발 행 일	2017-04-03	만 기 일	2032-04-03
	보 험 상 품	이행(하자)보증보험	증 권 번 호	100-000-201701444315
	보 험 계 약 자	김진태		
	보 험 기 간	2017-04-04 ~ 2027-04-03		

- 위 보험계약의 담보물로서 위의 담보물을 수령하되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사전구상권 행사시에는 우리회사 임의로 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은 담보제공자 본인이 부담함.
 - 위 담보물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없이 다음 각 호 1의 경우 등 보험계약의 이행완료가 확인되는 경우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 할 수 있음. [단, 위 담보물이 타 보험계약에도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타보험계약의 이행완료 확인 필요]
 - 이행(입찰)보증보험 계약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이 확인된 때
 - 당해 보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이행완료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증권이 회수되고 보험계약상의 이행의무가 이행완료 되었음이 확인(계약담당 공무원의 서명 날인 등)된 때
 -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우리회사에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전액 변제 되었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실효 등의 이유로 보험증권이 불이용 되었음을 증명하는 피보험자의 확인서(증권불이용 확인서)를 접수하였을 때
 -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귀사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때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바(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함.
 - 영문증권이 발급된 보험계약(Bond 상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본증과 교환하여 반환 또는 질권해지함.
 - 피보험자가 날인한 보험계약자의 이행완료확인서나 보험계약이 보증하는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는 등 보험계약상 보증채무 소멸이 확인된 때
 - 영문보증증권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또는 보험금 청구기간 경과시 (단,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시)
 - 다만, 전2항 또는 전3항의 반환 또는 질권해지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가 우리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연대보증채무, 사전 구상 관련 채무 등 포함) 우리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 시기, 가격으로 추심 또는 처분하여 변제충당 하겠으며, 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채권가압류 등의 사유 발생시 반환(질권해지) 보류 또는 압류추심 등에 의한 제3자의 처분이 가능함. 또한, 담보물 처리방법(반환 또는 질권해지 등)은 우리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르며, 우리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별도 통지나 동의 없이 발행기관에 질권소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우리회사의 전1항 또는 전4항에 따른 담보물 처분 후 잔여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 처분일까지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이를 담보물로 재가입 해야 하며, 재가입 지체 또는 불이행시 잔여담보금액에 대하여 담보물 보관기간(반환사유 발생일 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 을, 보관기간 종료일 익일부턴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공탁금 이율” 을 일단위로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실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담보제공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한 담보물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반환(질권해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증권, 우리회사 소정의 확인서 또는 하자보수종료 통지서(사본), 담보물 수령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함.
 - 전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또는 질권해지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회사에서 조치함.
 - 담보제공자는 위 담보물의 만기갱신 등 담보물 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소지, E-Mail 변경사항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회사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만기일에 반드시 우리회사 및 발행기관과 협의하고 방문하여 담보물 만기갱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만기갱신 지체, 불이행 또는 담보물에 대한 제 3자의 가압류 등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자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 위 담보물을 정히 수령함.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성남지점

취급자 김면우

지점장 신진용

2017년 04월 03일

※ 지점전화: 031-781-0021

※ 취급자 및 지점장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314-30-2017000698-0001